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벤처기업 창업’ 붐이 학계에도 밀려오고 있다.

국내의 박사급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벤처기업 형태의

「실험실 창업」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학계와 연구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 실험실 벤처를 중심으로 —

1. 서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벤처기업 창업’ 붐이 학계에도 밀려오고 있다. 전국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교수나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형태가 「실험실 창업」이다. 이는 2002년까지 1만개 이상의 벤처기업 창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더욱 빠른 속도로 학계와 연구계에 확산되고 있다.

「실험실 창업」이란 교수 또는 연구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 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박사급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된 내용은 대부분이 첨단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나 연구의 성격상 논문으로 발표가 된 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실용화시키고 사업화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사구시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바로 실험실 창업이다. 실험실 창업의 경우에는 하이테크에 관한 연구성과가 많으므로 기술 평가를 하는 경우 곧바로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강 정 애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8년 12월 30일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법률안에는 교수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의 겸직(법 제16조의 2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실험실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법 제18조의 2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비벤처로서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받은 기업에 한하여 주식회사(법인설립)의 최저 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법 제10조의 2항)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등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공장등록(법 제18조의 3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지식기반을 갖춘 젊은 층과 교수·연구원의 창업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고, 박사급 고급인력의 90% 이상이 근무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벤처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은 우선 개인 기업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후(자본금 5,000만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벤처 인증을 받는 경우, 선벤처 인증을 받아 기업을 설립(개인 기업 또는 법인)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어 진다. 개인 기업의 창업은 설립신고 절차가 간단하므로 본고에서는 많은 연구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선벤처 인증에 의한 실험실 창업과 법인 설립 과정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하기로 한다.

2. 실험실 창업 절차

(1) 예비 벤처기업 확인

예비 벤처기업 확인은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서는 사전에 벤처기업 평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장 4절 참고)으로부터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는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수행한다. 기술성 및 사업성의 관점에서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20여 일 후에 최종평가가 내려지게 된다.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가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발급 받아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한다.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서는 서류를 접수하여 15일 후에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이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인기업이나 법인으로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설립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평가판정이 무효화된다.

물론 벤처기업으로 설립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창업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먼저 설립자본금을 2천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벤처창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혜택의 수혜범위가 넓으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공인기관에 의해 평가받게 되므로 사업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제출해야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벤처기업 평가서
- 기술사업 계획서

(2) 실험실 사용 계약 및 교수·연구원 겸직여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비제조업, S/W업종 등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와 함께 실험실사용 허가(장소임대계약, 사용조건 등)를 얻어야 한다. 각 대학 및 기관마다 설치된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규정을 엄밀히 파악하고 장소임대 및 부대시설(실험실 기기, 전기 및 수도 등)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어야 향후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참고로 대학의 경우 교학처나 시설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3)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행정적인 기본절차를 마치게 되면, 상법상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개인)설립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먼저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개인기업과 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개인기업은 법인이 아니므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형태의 기업으로 무한 배상책임을 개인이 지니게 된다. 법인격은 주주와 경영자가 존재하며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은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고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되며,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투자한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성장성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주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영업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유리한 점이 많다. 특히,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고 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서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의 경우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일임하는 것이 편리한데, 일임을 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정관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청약서
-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부속서류
-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 창립총회의 의사록
- 이사·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 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주식회사의 자본을 2,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시에 11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며 등기부등본을 주금 납입 은행에 제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본화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을 등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

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갖추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최근에는 각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
- 개시 대차대조표
- 정관 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4) 벤처기업 확인서 취득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개인기업의 형태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형태의 기업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이미 발급 받은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와 함께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한다. 접수 후 15일 후에 정식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다.

(5)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의무신고할 사항이 있다. 종업원이 5인이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기업설립 후 필요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항 중 유리한 것도 있다. 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치신고를 하면 신고 후 벤처기업 확인, 조세감면, 병역특례연구요원 공급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설립 후 미리 무역업을 등록하는 것도 유리하다.

3. 실험실 창업의 고려사항

(1) 벤처기업 조세 감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 지원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대별된다. 국세 감면 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의 50%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내용은 창업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75%상당하는 납부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 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 협력업체의 조직

실험실 창업은 그 설립형태가 기술 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경영 및 관리 분야의 취약성이 쉽게 발견된다. 그러므로, 마케팅이나 광고, 판매 등을 담당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물색하여 업무를 전담시키고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많다.

(3) 기업의 확장 및 성장

벤처기업이 상품화에 성공하게 되면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여 기업이 성장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인력보강 및 재산의

취득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속적인 흑자를 이루게 될 경우에는 자본금을 확충하여 주식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KOSDAQ이라 불리는 자본시장에 참여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배가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에게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는 경영자문위원 또는 컨설팅 회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창업투자회사나 기술금융 등에게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4) 벤처기업평가기관

- 기술표준원 : 509-7217, 503-7995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789-9224, 789-9240
-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 : 769-6653, 769-6656
- 한국과학기술원창업지원실 : (042)869-4785, (042)864-4275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술이전팀 : 589-2852, 589-2870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디자인경영지원팀 : 708-2208, 765-9676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담보팀 : 829-8723, 829-880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 722-4507, 730-1734
-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042)869-1250, (042)869-1259

4 결론

본고에서는 실험실 창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 과정 및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지난 해 특별 조치법이 통과되어 교수 및 연구원의 겸직 및 창업이 활성화되자 전국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의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한 실험실창업 기업은 4개월만에 100사를 돌파하였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전국 실험실창업 현황에 따르면 정보통신·전자·전기업종이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생명공학·의학, 환경공학·화학, 기계·자동차·신소재 등이 공계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했다. 하지만 실험실 창업을 했으나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벤처창업을 서두르는 교수와 연구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실험실창업은 연말쯤 200여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실험실벤처 가운데 교수가 직접 대표자로 참여한 경우보다는 학생이 대표자로 나서고 교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연구원이 대표자로 참여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는 특별 조치법이 통과된 이후 겸직이 허용됨으로써 이·공계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들의 벤처기업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벤처에서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실사구시적인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고문헌

- <http://venture.smba.go.kr>
- 김철교, 조준희(1999),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 삼영사
- 남영호, 김완민(1998), "첨단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가능성 분석-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벤처경영연구, 1권 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 매일경제신문(1998-1999), 벤처기업 관련기사
- 명제선, 광성호(1998), 벤처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진흥공단
- 안준모, 김종인(1999), "한국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벤처경영연구, 2권 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 홍성도(1998), 벤처기업과 창업경영론, 학문사